

대전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1155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11551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소3583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선준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영

변론종결 2022. 7. 6.

판결선고 2022. 8. 3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소358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85,89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5,56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2021. 6. 24.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측 차량 운전자는 2020. 7. 30. 16:46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북대전IC 네거리를 북대전IC 방면에서 송강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편도 5차로 도로를 화암동 방면에서 송강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측 소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던 피고측 차량의 우측면을 원고측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20. 11. 23. D심의위원회는 원고측 차량과 피고측 차량의

과실비율을 65:35로 결정하였다(이하 ‘심의위원회 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2.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측 차량의 수리비인 5,055,230원(자기부담금 1,000,000원 포함) 중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3,285,890원(= 5,055,230원× 0.65)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우회전한 피고측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공제금 3,285,8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측 차량은 소로, 피고측 차량은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측 차량은 피고측 차량이 교차로를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측 차량은 피고측 차량이 우회전하여 우측 도로에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양보 없이 우회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측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6호증의 1, 2, 을 2~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측 차량은 4차선 도로를 따라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한 후 곧바로 연결된 소로에 진입하였고, 원고측 차량은 3차선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상황이었던 점, ② 원고측 차량이 도로에 표시된 차량유도선 안쪽으로 우회전한 것에 비하여 피고측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넓게

우회전하여 소로에 진입한 점, ③ 다만 원고측 차량도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고차량의 진행을 주시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측과 피고측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측 차량에도 최소한 30% 1)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상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총 손해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공제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측 차량의 과실비율 30%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 중 원고측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769,321원[= 3,285,890원 - (총 손해액 5,055,230원 × 원고측 차량 과실비율 30% - 자기부담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769,32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공제금 지급 다음날인 2020. 12. 17.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6.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용, 판사 장민주, 판사 강병하

1) 원고측 차량의 과실이 30%을 초과하여 인정되더라도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측 차량의 과실을 제1심 판결과 같이 30%로 보아 판단한다.

